

EU 위원회 규정 2017/335 호

2017.2.27

EU의회 및 EU이사회의 EU 집행위원회 규정 1333/2008 호 첨부자료 II의 개정에 관한 규정
특정한 저열량 제과류 내 감미료(sweetener)로서 스테비오 사이드(Steviol glycoside, E 960) 사용에
관한 규정

(EEF 관련 문서 포함)

EU 집행위원회,

EU 기능조약을 유념하며, EU의회와 EU 이사회가 2008년 12월 16일에 승인한 식품 첨가물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규정 제 1333/2008호와 동 규정의 10(3)조를 유념하여 이하 사항을 채택한다.

- (1) EU집행위원회 규정 제 1333/2008호의 첨부자료 II는 식품 및 그 사용조건에 관한 식품 첨가물 통합목록을 규정한다.
- (2) 동 목록은 EU집행위원회의 제안 혹은 적용에 따라 EU집행위원회 규정 제 1331/2008 호의 3(1)조와 동일 절차로 갱신될 수 있다.
- (3) 2015년 5월 27일에 특정한 저열량 제과류 내 감미료(sweetener)로서의 스테비오 사이드(E 960)의 사용 허가에 관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동 사항은 EU집행위원회 규정 제 1331/2008 호 4항에 의거하여 회원국가들에 적용되었다.
- (4) 스테비오 사이드는 규정 제 1333/2008호 7조에 규정된대로 열량을 감소시키거나 소비자들에게 저열량 식품으로 제공되어 저칼로리 감미료나 특정 제과류의 저열량성 성분으로 대체될 수 있다. 스테비오 사이드의 혼합물이나 설탕의 사용은 식품에 당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단순히 당분을 위해 설탕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할 때 향미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 (5) EU집행위원회는 동 기관의 규정 제 1333/2008호 내 3(2)항에 의거하여 해당 규정의 첨부자료 II에 기재된 식품 첨가물 통합목록(Union list of food additives)의 갱신을 위해 EU 식품안전당국(이하 당국)에 자문을 구하였다.
- (6) 2010년 EU 식품안전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는 스테비오 사이드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인 자문에 따르며 일일섭취량(ADI)을 몸무게 1kg당 4mg로 발표하였다.
- (7) 2015년 EU 식품안전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스테비오 사이드의 위해성 평가(exposure assessment)를 개정하고 유아기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이러한 위해평가 수준이 일일섭취량 보다 낮다는 사실을 밝혀주었다. 2015년 네델란드국립보건환경연구소(Rijksinstituut voor Volksgezondheid en Milieu)에 의해 수행된 위해성 평가는 이러한 식품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네델란드의 어린아이들에게 노출될 유해요소 95%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8) 2015년 EU 식품안전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국제식품 분류체계(FoodEx classification)로 스테비오 사이드(식품 분류 05.2)의 제한사항이나 예외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식품의 분류 수준으로 위해수준의 최고치에 해당하는 최대 2000mg/kg을 규정하였다. 또한 '설탕대체제품을 포함한 기타과자(Other confectionery including breath freshening micro-sweets)'는 스테비오 사이드의 위해요소가 되는 주요 식품류의 하나로 규명되지는 못하였다.
- (9) 전 연령대에서 위해성 평가 수치가 일일섭취량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고려해볼 때 감미료로서

스테비오 사이드의 사용권장량이나 사용수준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 (10) 그러므로 설탕대체제품을 포함한 기타과자(식품 분류 05.2) 내 특정한 저열량 제과류의 감미료로서 스테비오 사이드의 사용을 허가함이 적절하다. 이러한 기타과자류에는 딱딱한 제과류(사탕류와 막대사탕), 부드러운 제과류(츄잉사탕, 과일껍, 설탕형식품/마시멜로), 감초맛사탕, 누가와 마지판(nougat and marzipan; 최대 350mg/kg), 강한 향신의 정제형(최대 670mg/kg)과 설탕대체제품(최대 2000mg/kg)을 포함한다.
- (11) 이에 따라 EU집행위원회 규정 제 1333/2008호의 첨부자료 II 역시 개정이 필요하다
- (12) 본 규정에 명시된 조지들은 동식물식품사로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일치한다.

1조

EU집행위원회 규정 제 1333/2008호의 첨부자료 II는 본 규정의 첨부자료와 연동하여 변경된다.

2조

본 규정은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발간으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된다.

또한 동 규정은 전 회원국들에 적용된다.

17. 02. 27. 브뤼셀.

EU집행위원회 규정 제 1333/2008호의 첨부자료 II 내 Part E의 '설탕대체제품을 포함한 기타과자'는 이하와 같이 수정된다:

(a) E960 '무설탕 제과류(only confectionery with no added sugar)'인 스테비오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E 960	Steviol glycoside	350	(60)	무설탕의 제과류에 한하여 only confectionery with no added sugars 저열량의 딱딱한 제과류(사탕류와 막대사탕)에 한하여 only energy-reduced hard confectionery (candies and lollies) 저열량의 부드러운 제과류(츄잉사탕, 과일껌, 설탕형식품/마시멜로)에 한하여 only energy-reduced soft confectionery (chewy candies, fruit gums and foam sugar products/marshmallows) 저열량의 감초맛사탕에 한하여 only energy-reduced liquorice 저열량의 누가(nougat)에 한하여 only energy-reduce 저열량의 마지팬(marzipan)에 한하여 only energy-reduced marzipan
--	--------	-------------------	-----	------	---

(b) E960 '강한 향신의 무설탕 정제형(only strongly flavoured freshening throat pastilles with no added sugar)'인 스테비오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E 960	Steviol glycoside	670	(60)	무설탕 강한 향신의 정제형, 저열량이나 무설탕에 한하여
--	--------	-------------------	-----	------	--------------------------------

(c) E960 '무설탕의 설탕대체제품 (only breath-freshening micro-sweets, with no added sugar)'인 스테비오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E 960	Steviol glycoside	670	(60)	무설탕의 설탕대체제품, 강한 향신의 무설탕 정제형, 저열량이나 무설탕에 한하여
--	--------	-------------------	-----	------	---